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본관 2층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기(2025. 1. 1 ~ 2025. 12. 31) 별도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성 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윤식	1974.02.18	사내이사	계열회사의 등기임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김윤식	한화갤러리아(주) 명품관 점장	중앙대 경제학(학/석) 前 한화갤러리아(주) 마케팅부문장 前 한화갤러리아(주) 광고 사업장장 前 한화갤러리아(주) 영업전략실장 現 퓨어플러스(주) 사내이사 現 한화갤러리아(주) 명품관 점장	없 음

※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송지혜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송지혜	1975.05.18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계열회사의 등기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송지혜	(주)마녀공장 대표이사	연세대 영문학/하버드 비즈니스 스쿨(MBA) 前 야후코리아 어시스턴트매니저 前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前 휴젤 전략본부장 前 카카오 수석부사장 前 엔다이프(유) 대표이사 現 (주)마녀공장 대표이사	없 음

※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함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제4기 (당기)	제3기 (직전기)	비고
이사보수 한도액	30억원	40억원	10억 감액 (전기대비 75%)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 · 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기타 사항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회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갤러리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영 훈



※ 주주총회 기념품은 준비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관 변 경 (안)

현행	변경(안)	비고
제9조(이익배당우선주식) ①~③ (생략) ④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u>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제9조(이익배당우선주식) ①~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문구 삭제
제11조(전환주식) ①~⑧ (생략) ⑨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⑩ (생략)	제11조(전환주식) ①~⑧ (현행과 동일) ⑨ (삭제) ⑩ (현행과 동일)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조항 삭제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①~⑦ (생략) ⑧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⑨ (생략)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①~⑦ (현행과 동일) ⑧ (삭제) ⑧ (현행과 동일)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조항 삭제

현행	변경(안)	비고
제17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법 개정 반영
제22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④ (생략) ⑤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22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④ (현행과 동일) ⑤ (<u>삭제</u>)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조항 삭제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④ (생략) ⑤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	제2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④ (현행과 동일) ⑤ (<u>삭제</u>)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조항 삭제
제29조(소집지) <u>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 (조항 신설)	제29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u>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 ② <u>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내용 반영
제3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u>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u>	제3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u>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내용 반영

현행	변경(안)	비고
제38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3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조항 신설)	제38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7명</u>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u> ② <u>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u>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이사의 수 한도와 의무 선임비율 상향 내용 반영
제40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한다. ② <u>사외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외이사</u>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0조(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①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독립이사</u> 후보를 추천한다. ② <u>독립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독립이사</u>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
제41조(이사의 임기) ① <u>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u> ② <u>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u>	제41조(이사의 임기) <u>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u> ② (삭제)	이사의 임기 변경
제42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u>사외이사</u>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2조(이사의 보선) ① (현행과 동일) ② <u>독립이사</u>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

현행	변경(안)	비고
제4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u>사외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u>독립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
제50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위원회 ②~③ (생략)	제50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위원회 ②~③ (현행과 동일)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
제5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② (생략)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사외이사</u> 이어야 하고, <u>사외이사</u>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u>1명</u>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5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u>독립이사</u> 이어야 하고, <u>독립이사</u>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u>2명</u>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동일)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 반영 외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내용 반영

현행	변경(안)	비고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한다. ⑨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한다. ⑨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변경(안)	비고
(신 설)	<u>제59조의2(분기배당)</u> ① <u>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서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u> ②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③ <u>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u> <u>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u> <u>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u> <u>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u> <u>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u> <u>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u> <u>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u> <u>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에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u>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반영

현행	변경(안)	비고
<u><부 칙></u> <u>(신 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u> <u>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u> <u>제29조 및 제35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3조(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u> ① <u>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50조, 제52조(제4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 ② <u>2026년 7월 23일 이전의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상법 제5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u> <u>제4조(이사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u> <u>제41조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또는 그 후 선임(재선임 포함)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u>	정기주총 승인일자 및 상법 개정 에 따른 시행일자 반영